

전주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46062 판결 [점유회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

담당변호사 김학수, 한지영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조합(이하 ‘C조합’이라 한다)은 D에게 대출하면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. 5. 3. D 소유의 김제시 E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2014. 11. 21. D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56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12. 30. ‘D는 원고에게 96,628,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. 1. 14. 확정되었다.

다. C조합은 2016. 5. 23. 전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5. 24.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6. 6. 8.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5,537,499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.

마. C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2556호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8. 11. 14.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(전주)2018나12419호로 항소하였는데, 위 항소심 법원은 2019. 9. 5.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C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바. C조합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70378호로 상고하였지만 2019. 12. 27.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, 그 후 2020. 3. 6.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였다.

사. 피고는 2023. 9. 5. 이 사건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3,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현수막과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노종찬

별지